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제정

의안 번호	155
----------	-----

제출년월일 : 2000. 5.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파주시에서 설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동 시설을 이용하는 축산농가로부터 처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하천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안제3조제1항)
- 나. 처리시설에서는 신고대상시설규모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신고대상규모이상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제4조제2항)
- 다.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뇨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안제8조제1항)
- 라.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함. (안제9조제1항)
- 마.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하였거나 신고대상시설규모미만의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제11조제1항)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농가”라 함은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축산폐수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과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해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저장조”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경영수지분석을 통한 적정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축산폐수 수거대상 지역은 파주시 전역으로 한다.

②처리시설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규모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신고대상 규모이상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대상지역 및 배출시설의 범위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저장조동 설치권장) ①시장은 축산폐수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시설과 신고대상시설 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장조 및 축분 보관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거위탁계약) 처리시설을 통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파주시장 또는 대행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운반) 시장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대행) ①시장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축산농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관한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행업자와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시장은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0조(처리시설 사용료의 납입)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수집된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자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처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신고대상시설규모 미만의 축산농가 (저장조 또는 축분보관 시설을 설치한 축산농가에 한한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해 준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과정의 적정 여부
3. 기타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호과 ☎ 940-4244
입 안 자	환경보호과장	박 철 순
	환경시설담당	박 응 준
	담 당 자	김 경 호

【 별 표 】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

구 분	단 위	금 액 (원)			비고
		계	수집·운반수수료	처리시설사용료	
허가대상시설	ℓ 당	8	5	3	
신고대상시설	ℓ 당	7	5	2	
신고대상시설 규모미만	ℓ 당	5	5	-	